

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

2026. 4. .

국방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5년 9월 22일, 백선희의원 등 13인

나. 회부일자: 2025년 9월 23일

다.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:

제429회 국회(정기회)

제8차 국방위원회(2025.11.27.)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대체토
론, 소위원회부

제433회 국회(임시회)

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(2026.3.23.) 상정, 축조심사, 의결(대안반
영 폐기)

제2차 국방위원회(2026.3.24.) 상정, 소위심사보고, 찬반토론, 의결
(대안반영 폐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백선희 의원)

최근 군용차량 중 군 표준차량 교통사고로 화물 적재함에 탑승 중이
던 병사들이 사망하는 등 인명사고가 발생한 가운데, 원인으로 차량의

노후화, 좌석안전띠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장치의 부재 등의 문제점이 지적됨. 이에 따라 국민청원 등을 통해 군용차량에 좌석안전띠 설치 등 안전을 위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.

그런데 현행법은 군수품을 「물품관리법」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물품 중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, 합동참모본부와 육군·해군·공군에서 관리하는 물품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, 군용차량에 대한 규정은 부재함.

현행법상 중요한 사항인 군수품의 종류 및 범위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 적용 및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, 군용차량은 법적 관리체계가 미비하여 사고 예방 및 작전 안전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.

이에 군수품의 정의 조항에서 물품을 화력, 탄약, 군용차량, 통신·전자장비, 피복, 식량, 의료품 등의 물품으로 구체화하고 군용차량의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하여 군용차량의 관리를 의무화하며, 군 표준차량의 주요 구조 및 장치·부품 등의 범위와 성능·안전기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인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2조 및 제13조의3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수석전문위원 송수환)

개정안은 군수품의 정의를 구체화하고, 현재 국방부 훈령에 규정되어 있는 군용차량의 관리에 관한 사항(군용차량의 등록, 재물조사 및 불용 결정 등)을 법률에 규정하며, 군 표준차량의 범위·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

군용차량 탑승인원의 안전을 확보·강화하라는 국민동의청원의 취지를 반영하고 국방의 신성한 의무를 다하는 군용차량 이용 군 병력의 안전을 위해 국가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부각시켜 군에 대한 신뢰감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함.

4. 대체토론의 요지

없음

5. 소위원회 심사내용

(소위원장 부승찬)

군용차량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와 국민동의청원 등을 통해 제기된 군용차량에 좌석안전띠 설치 등 안전을 위한 철저한 관리 필요성을 반영하여 군용차량을 포함한 군수품 전체에 대한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대안을 마련함.

6. 찬반토론의 요지

없음

7. 심사결과

대안반영폐기